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2일, 임병하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임병하 의원

나. 제안이유

○ 도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현주)

가. 제정의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한 “2023 미술시장 조사(2022년 기준)” 보고서는 국내 미술시장을 2010년 거래작품 27,729점, 거래금액 4,835억원에서 2022년 거래작품 60,872점, 거래금액 8,066억원으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함.
- 2023년 미술시장 거래규모는 2022년과 대비하여 거래작품은 15.1% 감소한 51,590점 17%감소한 6,695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전망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구매 및 투자 감소로 인한 불황 전망이 40.4%로 호황 전망인 12.3%에 대비하여 높게 나타남.¹⁾
- 미술품의 주요 유통영역은 화랑, 아트페어(미술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 공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전시행사), 경매회사, 건축물미술

1) 조소현, “2023년 미술시장 결산 및 2024 전망”, 한국 미술시장 결산 및 전망 세미나, 예술경영지원센터

작품, 미술관이며, 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13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다, 2016년부터 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하면서 2021년 대비 2022년 업체수는 35.6%(240개), 종사자수는 28.5%(735명) 증가하였고 2013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작품판매금액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1년 급증하였고 2022년에도 크게 증가하였음.

- 미술 분야는 창작에 대한 지원을 근간으로, 전시 및 유통 체제를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술인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맡겨져 왔던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체제 확립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국가 구축을 위해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어 2023년 7월 25일 제정된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함)이 2024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미술 진흥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음.

〈조례안의 구성 체계〉

조항	조제목	조항	조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위탁
제2조	정의	제7조	포상
제3조	책무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부칙	시행일
제5조	지원 사업 등		

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 제정안 제1조부터 제정안 제3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 정의, 경상북도 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함.
- 제정안 제4조는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획내용은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실태조사 등으로 미술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정안 제5조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국내외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 및 유치, 미술품 유통 플랫폼의 개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며, 사업 수행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것은 향후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을 용이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제정안 제6조와 제정안 제7조는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제정안 제8조는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미술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부칙은 법의 시행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2022년을 기준으로 한 문화예술활동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제정안의 미술품에 해당하는 회화, 서예, 공예, 조소, 판화, 디자인, 만화, 영상, 사진, 건축, 설치, 행위, 조형, 혼합 등 시각 예술활동은 621건으로 2021년 대비 감소하였음.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각예술활동의 비율이 87%로 경남(87.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체 문화예술활동에서 시각예술활동의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²⁾임. 특히 경상북도 내 시각예술활동이 침체되고 세계적 규모의 전시, 아트페어 개최 및 관련 전문인력, 인프라 확장성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본 조례안을 근거로 행사성 위주의 미술시장을 탈피하여 미술시장의 활발한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문예연감(국가통계 승인번호 제433001호) 참조

미술 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제정안은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 시책 강구, 문화예술활동 권장·보호·육성, 재원 마련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바목에서 미술품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2024년 일부 조항 시행 후 2027년(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에 전체 조항이 시행될 법에 미술진흥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절한 조례로 판단됨.

다만, 제정안 제1조에서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이 목적인 점과 미술품의 유통이 경북지역에서 활발하지 않은 점, 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 간 협력과 교류 강화 노력의무를 부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은 지원계획 또는 지원 사업에 경북지역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역 간 협력 및 교류 강화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도록 하고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